# 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 및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조례 마련이 국무조정실에서 관리 중인 “손톱 밑 가시 뽑기” 과제로 확정됨

○ 이에 따라 성주군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조례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숙박업을 제외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「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」의【별표1】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숙박업소를 삭제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0조
-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조
-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4조
-「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」(환경부예규 485호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(1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2) 입법예고 : 의견 없음

(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4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별첨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되면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중에서 숙박업소를 제외함으로서 본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차원에서도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